

## 제18판 영양사시험문제집 정오표 (3쇄) - 수정15

페이지	오	정
1장 영양학 (p.3 문6 보기 3)	포도당으로 x전환되지 않는다.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1장 영양학 (p.21 문11 해설)	탄소수 10개로 이루어진 지방산은 짧은사슬지방산에 속한다.	탄소수 10개로 이루어진 지방산은 중간사슬지방산에 속한다.
1장 영양학 (p.37 문76)	(1)	(2)
“ (p.53 문65 보기 3)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한다.	~단백질 필요량이 감소한다.
“ (p.80 문71)	(3)	(5)
“ (p.93 문41 해설)	아연에 비하여 철이나 구리의 비율이 높을 때 아연흡수에 지장을 초래한다.	아연의 섭취가 철과 구리에 비해 비율이 높을 때 철과 구리의 흡수에 지장을 초래한다.
“ (p.106 문1 문제)	내에서 수분의 기능으로 옳은 ~	체내에서 수분의 기능으로 옳은 ~
“ (p.135 문20 해설)	② ~ 걸렸을 때(폐결핵, 당뇨, 신장질환)	② ~ 걸렸을 때(폐결핵, 신장질환)
“ (p.135 문21)	(4)	(4), (5)
“ (p.177 문4 보기 3)	(3) 노동시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따라 ~	(3) 노동시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따라 ~
2장 생화학 (p.213 문2)	(1)	(4)
“ (p.233 문11)	(4)	(5)
“ (p.244 문7 해설)	~ RNA 합성은 세포질에서, ~	~ RNA 합성은 핵에서, ~
4장 식품위생학 (p.2 문2)	(3)	(2), (3)
“ (p.55 문23)	(2)	(2), (4)
5장 영양교육 (p.87 문12 보기 4)	(4) 식이섭유의 과다섭취	(4) 식이섭유의 섭취저하
“ (p.88 문 15 보기 5)	(5) 평균필요량은 대상집단에서 건강한 ~	(5) 권장섭취량은 대상집단에서 건강한 ~
“ (p.92 문 26)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성인을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성인을 ~
“ (p.137 문 26)	(5)	(4), (5)
“ (p.141 문 4)	(1)	(2)
“ (p.142 문 7)	현재 문제	문제 삭제 (보건위생 행태조사는 현재 건강설문조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6장 식사요법 (p.150 문13 해설)	삼치는 지방 어육류군이고 ~	삼치는 중지방 어육류군이고 ~
“ (p.154 문1)	(2)	문제오류 (참고) 2번은 먹어도 되는 식품이고 3, 4, 5

		번은 제한할 식품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 (p.160 문33)	(5)	(2), (5)
~ (p.179 문21 보기 3)	(3) 형 간염은 식품이나 ~	(3) B형 간염은 식품이나 ~
~ (p.201 문2 해설)	~ 체중/신장 <sup>2</sup> [kg/m <sup>2</sup> ]이므로 65/1.72를 계산하면 ~	~ 체중/신장 <sup>2</sup> [kg/m <sup>2</sup> ]이므로 65/1.7 <sup>2</sup> 를 계산하면 ~
7장 식품위생법규 (p.289 문 7)	(3)	(3), (4)
7장 식품위생법규 (p.309 문 11)	(2)	답 없음
8장 단체급식 (p.7 문23 보기 1)	(1) 인건비가 절약된다.	(1) 인건비가 증가된다.
8장 단체급식 (p.30 문10)	(5)	(1)
~ (p.37 문41)	(1)	(4)
~ (p.39 문48)	(3)	(4)
~ (p.46 문17 보기 4)	(4) 가열소독할 수 있는 재열성 재질일 것	(4) 가열소독할 수 있는 내열성 재질일 것
~ (p.48 문22 해설, 답)	문제 20번 해설 참조 (4)	문제 29번 해설 참조 (1)
11장 식품미생물학 (p.281 문17 해설)	<i>Lactobacillus bulgaricus</i> 는 버터의 starter로 이용된다.	<i>Lactobacillus bulgaricus</i> 는 주로 발효유, 요구르트의 제조에 이용된다.

※ 7장 식품위생관계법규 - 309쪽 11번 문제

문제집을 집필할 당시에는 (2) 보건소장이 답입니다만, 법 제86조 ①이 2013년 5월 22일에 개정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6개월 후인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08쪽 9번 문제도 법규의 개정으로 당연히 변경되었습니다. (86조 ② 참고)

"참고 - 현행 법규"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 1장 생애주기영양학 - 135쪽 21번 문제

당뇨병이 있는 수유부는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잘못되었습니다).

비만한 수유부의 경우 모유 수유 시 체내 저장된 체지방이 모유생성에 이용되므로 체내 지방량 감소로 체중조절이 가능하므로 좋습니다. 또한 영아는 췌장 리파아제의 함량이 적고 담즙산이 적어 지질 분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강 리파아제의 기능이 활발하여 이를 보완하고 모유는 우유보다 유화가 더 잘되어 있고 모유에는 췌장 리파아제와 유사한 담즙산염 자극 리파아제가 있어 우유지방에 비해 지방흡수가 잘 되므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